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
바랍니다.

2013년 04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김**	김** 1964-06-17	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4길	무단전출
안**	안** 1968-09-25	강원도 속초시 중앙로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이 지민 문의전화 033-639-2851)

2013년 04월 17일

영랑동장

